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42 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정준호·복기왕·김정호

박희승 • 이연희 • 김동아

염태영 · 안태준 · 이학영
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, 그리고 언론인 등이 그 현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, 중앙수습본부 또는 지역수습 본부가 사고현장에서 인근에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 처와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해당 재난에 대한 왜곡보도, 허위사실 유포, 피해자 또는 그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(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)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 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 2 및 제15조의2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"를 "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,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인권보호지원단의 구성과 파견 등에"로 한다.

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5조의2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수습본부장(제6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말한다)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⑩ 제9항에 따른 현장상황실은 재난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을

대상으로 한 민원 접수·처리, 피해현황·사고수습 현황 등에 대한 정례적인 정보 전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수습지원단 파견 등)	제14조의2(수습지원단 파견 등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
	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
	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
	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
	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
	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인
	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
	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.
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	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,
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	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
<u>파견 등에</u> 필요한 사항은 대통	및 인권보호지원단의 구성과
령령으로 정한다.	<u>파견 등에</u>
제15조의2(중앙 및 지역사고수습	제15조의2(중앙 및 지역사고수습
본부) ① ~ ⑧ (생 략)	본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⑨ 수습본부장(제6항에 따른
	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
	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
	을 말한다)은 재난을 수습하기
	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
	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 다만,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

	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
	• 운영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⑩ 제9항에 따른 현장상황실은
	재난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
	등을 대상으로 한 민원 접수ㆍ
	처리, 피해현황·사고수습 현황
	등에 대한 정례적인 정보 전달
	관런 업무를 수행한다.
<u>⑨</u> 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9항과 같음)